지원제도 시리즈
InfoMation

꼭! 알아 두어야 할
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할 중요 지원제도를
매월 게제하여 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
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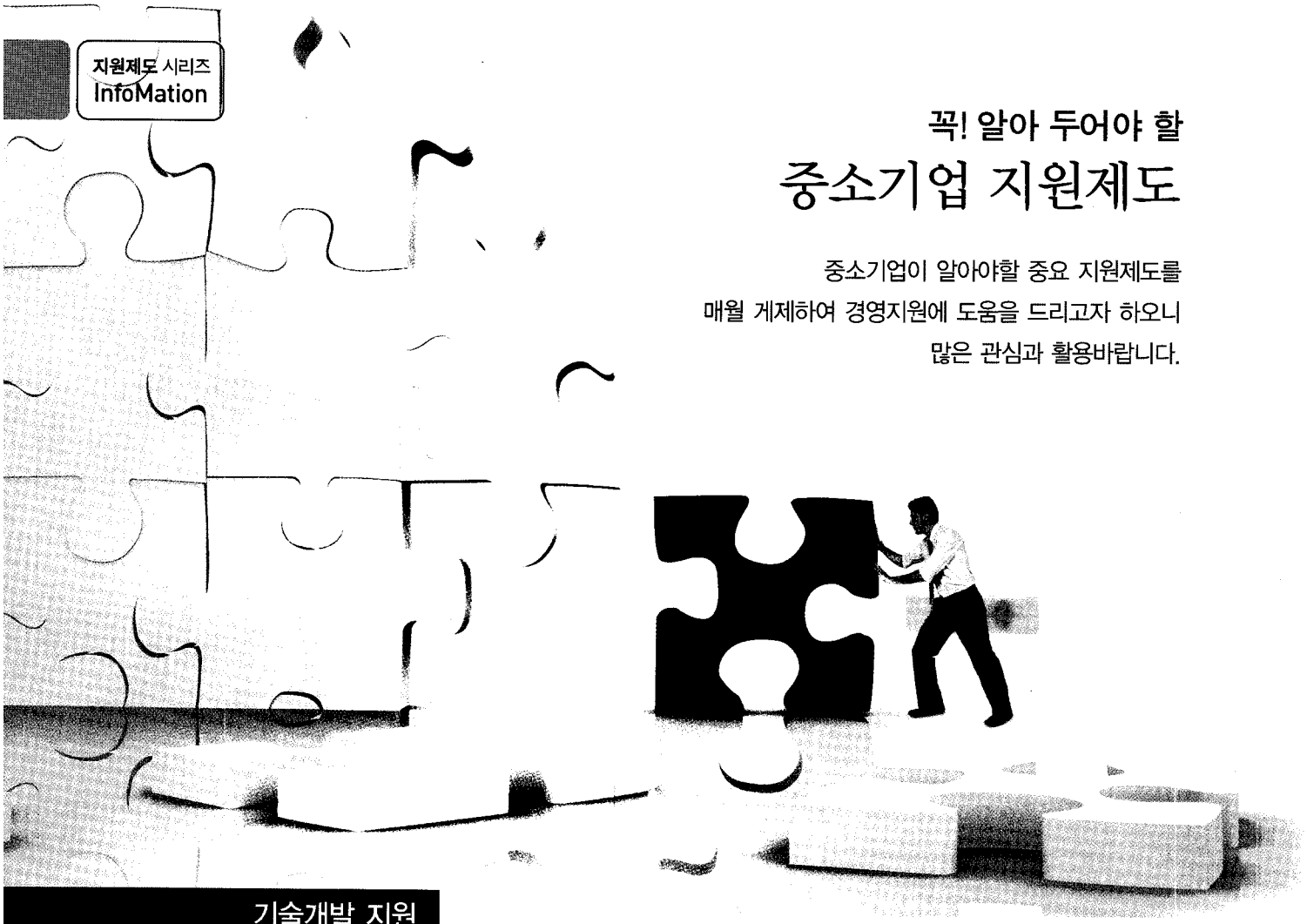

기술개발 지원

■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

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4,300여종의 시험연구 장비를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지방청의 모든 시험연구장비를 야간 시간을 포함해 '연중 내내'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제품의 품질확인, 신기술개발, 신제품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
이용 장비 서울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(제주시험연구센터 포함)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

이용 방법 민원인이 직접 설비를 작동, 시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즉시 확인

이용 수수료 무료(다만, 인증요건유지를 위한 '설비사용계약'은 제외)

신청 · 접수 지방중소기업청(제주시험연구센터 포함)

제출 서류 • 개방설비이용신청서(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지방청 민원실 활용)

- 자체 연구개발계획서, 공문 등의 기타 증빙서류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이용방법 :
  행정정보 ▶ 법령정보 ▶ 고시/공고/훈령 ▶ 고시번호 ▶ 제2009-23호(중소기업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▶ 개방설비이용신청서[별지3호서식(을)] 신청
  기간 연중 수시

문의처
-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: 042-481-4450,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참조
-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, 정책정보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■ 중소기업 R&D 기획역량혁신 사업

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&D자금, 인력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&D기획을 대신해 주거나,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주는 사업입니다. 세부사업으로는 R&D예비타당성 평가사업,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, 개별기업기술로드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.

지원 규모
- R&D예비타당성평가 : 100개사 내외(예산 30억원)
 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480개사 중 123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2,250만원
- 과제개발연구회 : 40개사 연구회 내외(예산 10억원)
 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233개 연구회 중 119개 연구회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1,500만원
- 개별기업기술로드맵 : 40개사 내외(예산 10억원)
  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129개사 중 37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2,250만원

지원 대상
- R&D예비타당성평가사업, 개별기업기술로드맵 지원사업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: 중소기업 관련 조합, 협회, 단체 등

지원 내용
- 신기술에 대한 R&D예비타당성평가, 조합 · 단체 등의 과제발굴연구회 활동, 개별기업의 중장기적인 R&D로드맵 수립지원 등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% 이내에서 최대 22.5백만원까지 지원

▶▶▶ 기술개발 지원

• R&D예비타당성평가사업의 경우 기획 결과가 우수한 과제(기업)는 별도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중소기업청 R&D사업을 통해 R&D자금을 지원

신청 · 접수 R&D예비타당성평가사업 관리시스템(www.smbafs.or.kr)이나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 관리시스템(www.smtrm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심사 · 평가내용

• 사업주체의 역량, 사업계획의 타당성, 개발목표의 적정성, 연구수행능력 등을 산 · 학 · 연 전문가를 통해 평가

• (1차)서면평가 ▶ (2차)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최종 선정

※ 과제발굴연규회지원사업은 서면평가만 실시

• 대면평가 시 다음의 서류 확인

–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
– 최근 1년간 재무제표(R&D예비타당성평가,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)

문의처

•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: 042-481-4437

•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02-3787-0526

•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참조

•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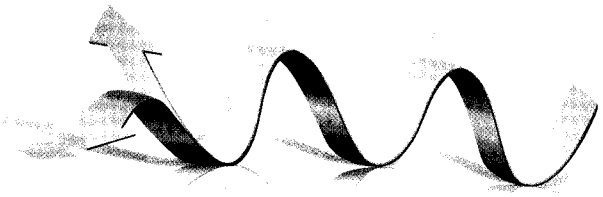

지식서비스분야 지원

■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

해외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요기술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을 발굴하여 주고, 해당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매칭시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.

지원 규모 25개사 내외(전체 예산 10억원)

※ '09년 지원현황 : 22개 신청기업 중 11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3,000만원

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인원을 보유한 중소기업

지원내용

- 해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발굴, 기술이전 계약체결, 도입기술의 사업화컨설팅까지 해외기술도입 전과정의 컨설팅 지원
  - ※ (기술도입과정) 중소기업의 수요기술(Needs) 분석 ▶ 기술도입 컨설팅전략 수립 ▶ 후보 기술 및 파트너 발굴분석 ▶ 매칭상담 컨설팅 ▶ 기술이전계약체결 지원
- 국가별 해외우수기술을 先발굴한 후, 국내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지원
  - ※ (기술도입과정) 중소기업의 수요기술(Needs) 발굴선정 ▶ 국내 수요기업 발굴 ▶ 매칭상담 컨설팅 ▶ 기술이전계약체결 지원
- 기업당 기술도입 컨설팅 소요비용의 80%(3천만원 한도) 지원
  - ※ 참여업체는 사업비의 20%(업체당 750만원) 부담

신청 · 접수

-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 접수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)

신청서류

- 신청 중소기업의 기술력 수준 및 도입대상 기술의 기술경쟁력, 해외도입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평가
- (1차) 서류심사 → (2차)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최종선정

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: 042-481-4436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02-3787-0514
-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